

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3호

이달의 주요뉴스

제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2012. **5**

CONTENTS

2012년 5월. 제143호



03

이달의 주요뉴스
0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04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04 “생활밀착형 인권보호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직원마당
06 봄, 시에스타

고충처리인 소개
07 고충처리인을 아시나요?

판례토크
08 ‘개인정보’는 가치다

자료실 탐방
09 한 곳에서 찾는 언론법제정보,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전문 도서관

이용재의 질문 노트
10 전공자가 본 영화 <건축학개론>

기고
11 2012 선거의 해, SNS의 역할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 왼쪽부터 오세현 위원, 김택근 위원, 김준범 위원, 박기동 선거기사심의위 위원장, 권성 언론중재위 위원장, 문명호 위원, 박석태 위원, 원병설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오광건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가나다 순)	
박 기 동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 병 설 부위원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현 배재대 초빙교수
김 준 범 위원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편집위원 현 NIE 특임강사(한국언론진흥재단)
김 택 근 위원	경향닷컴 사장 제33대 편집기자협회 회장
문 명 호 위원	문화일보 이사 겸 논설주간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박 석 태 위원	경인일보 부국장,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오 세 현 위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안제부장검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준 응 위원	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 우 성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4월 23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의 선거기사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및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엄정한 심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며, “국가의 중대사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기동 위원(변호사), 부위원장에 원병설 위원(배재대 초빙교수)을 각각 선출했으며, 올해 4월 23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객관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생활밀착형 인권보호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 병 철 위원장

한양사이버대 학장
한양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양대 총무처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양대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이 채택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라는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2001년에 설립된 준국제, 준사법적인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40만건이 넘는 진정·상담·민원·안내를 처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 7월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만났다.

Q. 인권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인권위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공적·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개정으로 공기업과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밖에 인권정책에 대한 연구 및 의견표명,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통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위를 찾아오면 인권상담센터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 진정을 접수하면 위원회가 조사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권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인권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을텐데요, 그 중 가장 취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고문 같은 심각한 것들만 인권침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시점에서는 이런 인권침해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삶의 양상이 다양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취약한 분야는 너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위가 2010년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첫 번째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조사에는 개인정보 보호부분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Q. 인권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담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결정내용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행정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보며 저는 그게 인권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권고의 수용률은 약 86%로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는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권유 차원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듣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한 인권침해의 경우 검찰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인권 관련 정책의 개선된 사항이나 접수된 진정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과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이 향상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고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부임 초 1년에 4,000건에 가까운 교도소 수용자의 진정사건이 작년에는 2,000여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천경찰서 교문 사건을 밝힌 것,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남성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160cm 이하 남성의 결혼정보회사 가입, 군인의 인권 향상,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 금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개선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 인권보호와 더불어 CCTV로 인한 침해등과 관련된 정보인권의 증진과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Q. 위원장님께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당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2010년에 모 일간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가 달라 억울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감시, 비판 역할로 인해 인권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인권위를 돌아보는 거울이자 평가하는 잣대라고 보며, 저희 위원회가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Q. 작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지는 취지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인간의 인격은 인품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품격은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일상화되느냐로 평가할 것입니다. 인권은 생활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삶의 질이며, 최상의 인권보장 장치는 민주주의와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며, 이제는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 등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인내력을 가지고 인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상응하는 인권개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이 다 솔
기획팀

봄, 시에스타



완연한 봄이다. 유난히 지독했던 기상 이변으로 강풍과 돌풍 주의보를 전하던 뉴스는 각지의 봄꽃 축제를 알리기에 분주하다. 둔탁한 검은 코트를 벗은 거리에는 봄내음을 전하는 생기가 가득하다. 봄기운을 만끽하며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는 오후의 여유는 그래서 더 반갑다. 스프르 눈이 감기는 식곤증도 춘곤증이라며 용서되는 오후다.

오랜만의 서울의 햇살은 1년 전 오늘 나를 반기던 스페인의 그것과 닮았다. 덕수궁의 햇살이 상기시킨 스페인의 기억은 레티로 공원의 시에스타로 가득 차 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마드리드에는 레티로 공원이 있다.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여의도 규모의 공원에는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누고 기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스페인 특유의 여유가 넘친다. 하루 중 가장 바쁠 오후 시간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전형적인 직장인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는 이 '엉뚱한' 시간을 나는 '레티로 타임'이라 불렀다.

스페인의 관습인 시에스타는 흔히들 '낮잠 시간'으로 알고 있다. 오후 두시부터 다섯시까지 마드리드는 정적의 도시가 된다.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다. 대학에는 수업도 없다. 실제로 나는 마드리드에 도착한 후 시에스타 문화에 익숙치 않아 수업 교재를 열흘 간 구입하지 못했다. 2000년대 후반에 시에스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일기도 했으나, 수백 년 세월의 관습을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업무와 학업을 중단하고 '인생을 즐기러' 떠난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집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였다. 가족문화가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스페인이다웠다. 햇살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스페인 사람들의 시에스타는 그렇기에 감동적이었다.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점심을 즐기고 자녀와 부모님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저녁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와 달리 스페인은 '이 좋은 햇살을 즐기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며 하루의 가장 큰 성찬으로 점심문화가 발달했다. 한국사람에게는 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긋한 스페인의 점심에는 느낌의 미학이 온전히 담겨있다. 야외 테라스를 가득 메우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따스한 여유가 전해진다. '황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야죠.'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동양의 어린 소녀에게 집주인 아저씨가 해주신 이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을 울린다.

덕수궁 돌담길의 넥타이는 힘차게 펄럭이고 또각또각 구두소리는 비트수가 점점 빨라진다. 스페인을 회상하며 일상의 여유를 상상하던 나는 여전히 바쁜 그들의 일상에 현실로 돌아온다. 스페인의 '사치스러운' 여유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스페인은 다섯시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해 여덟시 이후에 일과를 끝낸다. 시에스타는 낮이 긴 나라의 특권이지 게으르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 특권을 누리는 그들의 관습이 '지혜'인지 '사치'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 작은 지혜를 발휘한 한국형 시에스타를 꿈꾼다. 🌈



고충처리인을 아시나요?

이재범
홍보팀 차장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로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각 언론사에는 과연 고충처리인 제도를 잘 지키고 있을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송 38개사, 뉴스통신 12개사, 일간신문사 235개사 등 총 285개사 중 고충처리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69개사에 이르고 있고, 고충처리인을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도 편집국장 등 사내의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원인으로서의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여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규정

된 고충처리인 제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 관련 기금에 대한 지원 배제 및 차등 지원 등을 추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 밖에 고충처리인 제도의 홍보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고,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고충처리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진식 과장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며, 향후 고충처리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독자나 시청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며,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며 대상 언론사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최근 모 지역일간지는 고충처리인으로 사내 직원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외부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둬으로써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를 통해 독자들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언론사가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개인정보’는 가치다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땡동!”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생면부지의 실장님이 내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어떤 날에는 경기도 파주 인근에 좋은 땅 있으니 사두라고도 한다. 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살 일이지, 솔직히 그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내 개인정보가 저들의 수중에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부다.

지난 3월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휴대폰 번호 따는 것도 쉽지 않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둔감하기도 하다.

최근 CCTV가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식이다. 언론은 CCTV의 유용성을 부각시키고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골목, 놀이터, 편의점 할 것 없이 생활공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분명한데도 우리의 안전을 약속하는 CCTV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소 진부하게 들리는 명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다.

작년 개인정보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먼저, 전교조 관련 판결이다.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 국회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의원은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이에 기초한 교육의 선택권 내지는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11. 5. 24. 선고 2011마319 결정)

대법원은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관련 정보가 교사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라고 보았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아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반드시 필요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에게 교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서처럼 교사선택권이 보장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로마켓 관련 판결이다. 로마켓은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던 인터넷포털사이트다. 로마켓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법조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입정보를 DB로 구축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승소율,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여부, 현직 관검사들과의 인맥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러한 로마켓의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들이 게시금지소송을 제기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가 제공하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이 불완전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직업인지는 사법연수원 시절로 돌아가면 알 수 있다. 변호사될 사람들에게도 나라에서 월급을 쥐가며 공부시켰다. 그러나 꼭 이런 직업적 공공성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들, 즉 ‘승소율’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은 요긴한 정보일 것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본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이에 맞서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심과 성찰이 필요할 때다. 

한 곳에서 찾는 언론법제정보,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전문 도서관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미숙
정책연구팀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실은 2005년부터 언론법제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연구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시작으로 2006년 3월에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검색, 대출정보 확인, 자료예약 및 구입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웹기반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libportal.co.kr/pac>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언론중재, 연간보고서, 언론

 사람 등을 비롯하여 4,700여 권의 단행본, 국내외의 40여 종의 정기간행물, 언론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발행한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0년 말에는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자료실에 비치된 ‘검색전용 PC’를 통해 국회디지털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이 구축한 원문 DB를 온라인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법제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역량이 강화되고 정보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실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실

담당자는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실 이용에 관한 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나아가 2008년 1월에는 ‘자료선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자료실 소장자료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수집의 내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중한 자료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사무처 직원 및 중재위원만을 대상으로 대출이 허용되며,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고 도서관 내의 자료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 부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은 언론중재제도의 정책적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와 실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학술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법제에 대해 궁금한 사실, 판례, 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위원회 자료실을 방문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월~금 : 09:00~12:00, 13:00~18:00
 (토·일요일 및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 제외)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0M
 프레스센터빌딩 6층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97-3045, FAX : 02-397-3049)

이용재의 **잡문 노트**

이용재 (칼럼니스트)

전공자가 본 영화 <건축학개론>



았다.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는 설계 수업을 위해 설계실 복도에 발을 들여 놓으면 언제나 책 아저씨가 가장 먼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 그의 역할은 나름 중요했다. 물론 학생들이 찾는 책을 구해다 주기도 했지만, 영업에 있어 책 아저씨는 그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오랜 건축과 출입으로 학생들의 설계 수업을 꿰뚫고 각 학년과 학기 설계 수업에 필요할 것만 같은 책들을 엄선, 학생들에게 먼저 내밀었다. 이번 학기, 개인 주택 설계 맞지? 자, 이 건축가 책 한 번 봐봐, 1963년부터 쪽 개인 주택 설계에만 인생을 바쳤는데…… 고층 빌딩?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수놓은 이 마천루들을 일단 한 번 보면 아이디어가…… 글을 쓰며 바로 옆 책장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산 책 몇 권이 아직도 남아 눈에 들어온다. 어떤 책들은 나중에서야 원본이 아니고, 그렇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복사한 책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주워듣기도 했다.

그게 벌써 한 십칠팔 년 전,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아직도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요즘도 그런 분위 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필자가 건축과 학생이던 십여 년 전에는 '책 아저씨'라는 존재가 있었다. 말 그대로 책장사였다. 소위 '작품집'이라고 불리는 유명 건축가의 두툼한 사진집이며 건축 이론서 등을, 아주머니들의 장보기 도우미 노릇을 하는 두 바퀴 카트에 잔뜩 싣고 와 팔

그때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때였다. 기본 경쟁률이 3~4대 1로, 의대 다음으로 이공계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게 다 이병헌이 건축과 학생으로 주연을 맡은 캠퍼스 드라마 <내일은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쨌든 건축과 출신 감독에다 하필이면 필자가 막 건축에 발을 들여놓던 그 시절 이야기라는 누군가의 말에, 평소답지 않게 부지런을 떨어 개봉 첫 회를 보았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집을 짓지. 호구조사의 핑계가 참 좋다. 십여 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세월을 승민(연태웅 분)은 능청스럽게 케내려 한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가는 건축주를 만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꼼꼼하게 관찰해 설계에 반영한다. 법이며 기술, 예산 등의 현실적 제한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삶을 반영해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영화 초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사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필자는 주로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잠을 자곤 했지만, 책상의 위, 아래 상관없이 이러한 현재의 설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다.

자연스럽기는 과거의 설정 또한 마찬가지다. 건축학개론 담당교수(김의성 분)는 그야말로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답게 비전공자, 또는 초심자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재미를 붙여주려 노력한다. '가까이 보면 다르다'라고 누군가 그랬던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이며 현상을 가까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 삶을 재인식 및 재발견하라는 의도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싹을 틔운 첫사랑은 대부분 그렇듯 첫사랑에 그치고 말았지만, 추억으로 남는 종류 가운데는 특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처음이든 두세 네 번째든 상관없이,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영화에서처럼 마음에 새롭게 담기 위한 동네 나들이 한번 권하고 싶다. 이름에 걸맞게, 건축이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영화였다. 🍷



2012 선거의 해, SNS의 역할



우 예 슬
대학원생

2012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58개국에서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해.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1일 총선을 시작으로 8개월 뒤인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정치행보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 이용이 허용되면서 선거운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열렸다. 특히 후보자들은 거리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자신의 공약과 이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SNS 선거운동.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칫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소통의 공간인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은 기존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난무하는 왜곡된 정보를 막기 위해 금지됐었다. 하지만 작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번 19대 총선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고 트위터 사용자도 1000만 명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사회적 소통 공간에서 표심잡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진실인 듯 유포되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선거운동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따른 위법사항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약 후보자가 SNS를 통해 허

위사실을 전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해 자신을 홍보하는 이른바 '인터넷 알바'를 쓰는 경우에 위법이 된다. 또 대가를 받은 사람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SNS 선거운동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SNS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들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조언, 적극적인 투표를 위한 독려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사표출을 해야 한다. 또 후보자 역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지역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거정책 홍보 게시물이 아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긍정적인 매개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익 광고와 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위법사항을 스스로 검열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게시물이 포탈에 올라오면 자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을 SNS. 2012년 대의민주주의의 꽃이 될 대선에서는 열정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SNS 역할을 기대해 본다. 

위 기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와 페이스북 기고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COMMISSIONERS



법률신문에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와 그 구제방안' 기고



송동희 위원(서울제6중재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4월 23일 법률신문에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와 그 구제방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노 위원은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 중재와 같은 ADR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출간



박정호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이 공저자로 참여한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이 출간됐다. 박 변호사는 “증권범죄는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사례를 모아 자본시장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버지니까」 출간



송동선 위원(부산중재부, 전 국제신문 편집위원)이 집필한 수필집 「아버지니까」(함께북스 펴냄)가 4월 24일 출간됐다. 송 위원은 이 책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얻은 깨달음과 느꼈던 감정들을 담았으며, 가정 안팎으로 겪은 아픔을 드러낼 수 없는 고독한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조명했다.

OBS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으로 선임



홍승영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OBS(경인TV) 제5기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평가원으로 선임됐다. 시청자위원회는 자체심의규정에 따른 장르별 콘텐츠의 적정성 평가,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일보에 '방송파업과 선거보도' 기고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방과 교수)은 4월 5일 국민일보에 '방송파업과 선거보도'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한 위원은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재하고 분석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방송사의 파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서원학원 정이사로 승인



신승현 위원(충북중재부,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서원학원의 정이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원학원은 이 사진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1992년부터 주인 없는 학원으로 구성원들의 내용 등 20년간의 갈등의 역사를 뒤로한 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문화 체험관 개관식 참석



고규정 위원(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창원지법에서 주최한 법원문화 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체험관은 사법제도, 민사 사건기록, 법원사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국민에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체험관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청년제주 장학위원회 제1기 장학생 선발



권범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사단법인 청년제주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2일 2012년 제1기 장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장학금은 4월 21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청년제주 창립 1주년 기념식 때 전달됐다.



위원회 소식

NEWS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회 열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월 16일, 그동안의 선거기사심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산 좌담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심의 107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고, 시정요구 22건을 처리했다.

박기동 위원장은 “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벌어진 위반도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편파 보도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린 언론사도 적지 않았다”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변론서비스, 첫 사건 진행

위원회는 4월 4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첫 무료변론서비스를 진행했다. 탈북주민 A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언론조정·중재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절차에 필요한 무료변론서비스를 제공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회적 배려계층 및 여건이 열악한 언론사를 무상으로 조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 실시



위원회는 4월 25일 이현주 성균관대래원 원장을 초빙해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예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사예절, 전화예절, 언어예절,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예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정희 부장판사, 중재부장직 사퇴

노정희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 서울제6중재부 중재부장)는 4월 23일자로 중재부장직을 사퇴했다.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71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성립 175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7건(동의 8건, 이의 18건, 계속 11건), 조정불성립결정 89건, 기각 16건, 각하 4건, 취하 297건, 계류 92건이며, 성공률별로는 조정성공률 63.1%, 본안성공률 79.1%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32건, 신문 195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79건, 방송 77건, 뉴스통신 22건, 잡지 1건, 기타 4건이었다. 한편, 중재사건은 14건이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기준일자 : 2012. 1. 1.~2012. 4. 20.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리 결과										성공률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710	426	175	8	18	11	89	16	4	172	125	92	63.1%	79.1%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02건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는 범죄수법 상세묘사 38건, 피의자 신원공개 22건,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21건, 자살 관련 보도 17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3건, 보도윤리 위반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66건, 일간지 26건, 뉴스통신 9건, 주간지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 현황

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공평성 및 형평성 위반 6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3건, 외부기고 위반 17건, 광고제한 위반 15건 등 자체심의 107건에 대해 사과문 게재 4건, 정정 보도문 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58건, 권고 33건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22건이 접수되어 사과문 게재 3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 3건, 취하 7건, 기각 5건, 각하 1건으로 처리됐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1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2건 등 자체심의 3건에 대해 주의 1건, 권고 2건의 결정을 내렸다.

상담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88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절차 안내 826건, 재상담 예정 156건, 타기관 안내 52건, 법적절차 안내 35건 등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 274건, 인터넷신문 253건, 방송 186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14건, 주간신문 88건, 뉴스통신 46건, 잡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41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12건, 인턴십 프로그램 12건, 교육연수기관 6건, 대학 4건, 법무수습교육 2건, 공·사기업 2건, 지자체 2건, 기타 1건이다. 법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 진행됐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